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2호
- 나. 제 안 자 : 권수정의원 외 16명
- 다. 제출일자 : 2018년 10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12월 28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안 제2조 외).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포함한 55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근로와 노동의 개념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과 함께 “노동”을 생산의 3대 요소로 보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령에서도 “노동”과 “근로”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혼용하고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정부 부처 또는 직제의 명칭으로 “노동”이라는 용어가 상용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노동민생정책관’을 두고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음.<sup>1)</sup>

####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례명		개정내용
1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 비정규직근로자 → 비정규직노동자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3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근로계약 → 노동계약
4	「공동주택 관리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 근로계약서 → 노동계약서
6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7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복지시설 → 노동복지시설
8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이사제
9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청소년 → 노동청소년
10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11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소득 → 노동소득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피해여성근로자 → 피해여성노동자
13	「보육 조례」	-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 보육교직원 노동여건
14	「사회복지기금 조례」	- 자활근로 → 자활노동
15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7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 역사적으로도 1923년 5월 1일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1963년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날짜는 3월 10일로 변경되었고, 1995년에 날짜만 다시 5월 1일로 개정되는 등 “근로” 또는 “노동”이라는 용어는 함께 혼용 사용되어 왔음(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참고).

	조례명	개정내용
18	「생활임금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19	「성평등 기본조례」	- 근로자 → 노동자, 근로여성 → 노동여성
20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근로계약서 → 노동계약서
21	「인권 기본 조례」	- 근로 → 노동
22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 근로시간 → 노동시간
23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근로관계법령 → 노동관계법령
24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근로지원인 → 노동지원인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공공근로요원 → 공공노동요원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주거·근로 → 교육·주거·노동
27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계약 → 노동계약
28	「청년 기본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29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 → 노동, 근로자 → 노동자
30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 청년근로자 → 청년노동자
3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근로 → 노동
3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청소년 → 노동청소년
33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근로계약 → 노동계약
34	「택시기본 조례」	- 근로 → 노동
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근로 청소년 → 노동 청소년
36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근로관계 → 노동관계
3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고용·근로조건 → 고용·노동조건
38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노동자
3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근로자 → 여성노동자
4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1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현장근로자 → 현장노동자
42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3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44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5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퇴직근로자 → 퇴직노동자
47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84회 정례회 폐지조례안
48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9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0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1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2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상시고용근로자 → 상시고용노동자
5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5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속적 의미의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초를 보이고 있음.

-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sup>2)</sup>
- 또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한 바 있음.<sup>3)</sup>
- 이처럼 “노동”의 용어가 개별 법령이나 정부 부처 명칭으로 상용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도입된 용어를 청산할 필요성이 크며, “노동”이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용어를 변경할 당위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에서 관계법령의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과 같은 용어를

---

2)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1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헌법이 “근로”, “근로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임(2017.1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3)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근로’를 ‘노동’으로(2018. 3. 26).

사용하여 자치법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예를 들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근로기준법」 에서 ‘비정규직근로자’, ‘근로자’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2조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안 제3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고<sup>4)</sup>,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도 있음.<sup>5)</sup>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4호에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와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규정함.

5)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위임조

- 따라서 법령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용어 정의를 직접 인용하거나 관계법령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sup>6)</sup>

담당조사관	연락처
이 시 우	02) 2180-8056

례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노동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도 벗어날 것임.

6)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제·개정 허용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위법령과 무관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의견(자문1, 자문3)이 감설, 모두 무방하다는 의견(자문2)이 을설임(2018.10. 입법담당관).

##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⑤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⑦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2>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

**검토결과 : 수정(조문삭제) 22건 / 수용(원안동의) 33건**

연번	조례명	조문	상위 법령 상의 용어	수용여부
1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 비정규직근로자 → 비정규직노동자	2조	(법령조문 직접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비정규직근로자	수정 (삭제)
2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3조	(법령조문 직접인용) 근로기준법 : 근로자	수정 (삭제)
3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근로계약 → 노동계약	4조	이건 없음	수용
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조	이건 없음	수용
5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 근로계약서 → 노동계약서	6조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수정 (삭제)
6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7조	(법령조문 직접인용) 근로기준법 : 근로자	수정 (삭제)
7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복지시설 → 노동복지시설	8조	(법령조문 직접인용)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시설	수정 (삭제)
8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이사제	9조	(법령조문 직접인용) 근로기준법 : 근로자	수정 (삭제)
9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청소년 → 노동청소년	10조	이건 없음	수용
10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조건 → 노동조건	11조	이건 없음	수용

연번	조 례 명	조문	조례 용어 인용법령 등	수용여부
11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소득 → 노동소득	12조	이건 없음	수용
12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피해여성근로자 → 피해여성노동자	13조	강제노역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 의미의 “노동”은 부적절	수정 (삭제)
1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 보육교직원 노동여건	14조	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수정 (삭제)
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자활근로 → 자활노동	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자활근로	수정 (삭제)
15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자활근로	수정 (삭제)
16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자활근로	수정 (삭제)
17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자활근로	수정 (삭제)
18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근로자 → 노동자	19조	이건 없음	수용
1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근로자 → 노동자, 근로여성 → 노동여성	20조	이건 없음	수용
20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근로계약서 → 노동계약서	21조	근로기준법시행령 : 근로계약서	수정 (삭제)

연번	조 례 명	조문	조례 용어 인용법령 등	수용여부
2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근로 → 노동	22조	이건 없음	수용
22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근로시간 → 노동시간	23조	이건 없음	수용
2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근로관계법령 → 노동관계법령	24조	이건 없음	수용
24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근로지원인 → 노동지원인	25조	지방공무원법 : 근로지원인	수정 (삭제)
2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공공근로요원 → 공공노동요원	26조	이건 없음	수용
2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주거·근로 → 교육·주거·노동	2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 교육·주거·근로	수정 (삭제)
27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계약 → 노동계약	28조	이건 없음	수용
2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근로조건 → 노동조건	29조	이건 없음	수용
29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 → 노동, 근로자 → 노동자	30조	이건 없음	수용
30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청년근로자 → 청년노동자	31조	이건 없음	수용

연번	조 례 명	조문	조례 용어 인용법령 등	수용여부
31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근로 → 노동	32조	이건 없음	수용
3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청소년 → 노동청소년	33조	이건 없음	수용
33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근로계약 → 노동계약	34조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수정 (삭제)
34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근로 → 노동	35조	이건 없음	수용
3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근로 청소년 → 노동 청소년	36조	이건 없음	수용
36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근로관계 → 노동관계	37조	이건 없음	수용
3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고용·근로조건 → 고용·노동조건	38조	이건 없음	수용
38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노동자	39조	이건 없음	수용
39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근로자 → 여성노동자	4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여성근로자	수정 (삭제)
40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근로자 → 노동자	41조	이건 없음	수용

연번	조 례 명	조문	조례 용어 인용법령 등	수용여부
4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현장근로자 → 현장노동자	42조	이건 없음	수용
4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근로자 → 노동자	43조	이건 없음	수용
43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44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수정 (삭제)
4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근로자 → 노동자	45조	이건 없음	수용
45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근로자 → 노동자	46조	이건 없음	수용
46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퇴직근로자 → 퇴직노동자	47조	이건 없음	수용
47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84회(임시회) 폐지조례안	48조	폐지조례안	수정 (삭제)
48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근로자 → 노동자	49조	사회적기업육성법 : 근로자	수정 (삭제)
49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근로자 → 노동자	50조	이건 없음	수용
50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1조	이건없음	수용

연번	조 례 명	조문	조례 용어 인용법령 등	수용여부
5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자 → 노동자	52조	근로자이사제 조례(이건 제 시)와 일치시켜야 함.	수정 (삭제)
52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근로자 → 노동자	53조	이건 없음	수용
53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상시고용근로자 → 상시고용노동자	54조	이건 없음	수용
5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 례 근로자 → 노동자	55조	이건 없음	수용
55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 한 조례 근로자 → 노동자	56조	근로기준법 : 근로자	수정 (삭제)